2020학년도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동서대학교 입학처

목 차

Ⅰ. 전형일정 ·····3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

Ⅲ. 지원자격 ·····4
1. 대상 및 요건 ·····4
2. 지원자격 인정기준 ·····5

Ⅳ. 제출서류 ·····7

Ⅴ. 전형방법 ·····8

Ⅵ. 원서접수 및 전형료 ·····8

Ⅶ. 합격자 발표 및 등록 ·····9

Ⅷ. 수험생 유의사항 ·····9

Ⅰ.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19. 9. 6(금) ~ 9. 10.(화) 09:00 ~ 18:00	동서대학교 입학처	• 원서는 방문 접수
서류제출	2019. 9. 17(화)까지 09:00 ~ 17:00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17일(화) 소인 유효) •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스튜던트플라자 2층 입학처
면접고사	2019. 10. 05.(토)		• 면접고사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합격자발표	2019. 11. 08(금)	홈페이지 개별 조회	•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함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 13(금)	농협,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 합격자가 등록 기간 내에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최종등록 (잔여등록금 납부)	2020. 2. 5(수) ~ 2. 7.(금)	농협,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 위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 고
인문·사회	영어학과	2	
	일본어학과	2	
	중국어학과	2	
	국제통상학과	1	
	국제물류학과	1	
	International Studies과	2	
	방송영상학과	1	
	광고홍보학과	1	
공학	컴퓨터공학과	2	
	게임학과	2	
예체능	디자인학부	2	
	영화과	2	
총인원		20	

▶ 총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합니다.

Ⅲ. 지원자격

1. 대상 및 요건

- 국내·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정원 외 입학정원 2% 이내)

<table>
<tr><th colspan="2" rowspan="3">지원 대상</th><th colspan="9">지원자격</th></tr>
<tr><th rowspan="2">요건</th><th colspan="8">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th><th rowspan="2">학력 요건</th></tr>
<tr><th colspan="3">학생</th><th colspan="3">보호자</th><th colspan="2">배우자</th></tr>
<tr><th>재학</th><th>거주</th><th>체류</th><th>근무</th><th>거주</th><th>체류</th><th>거주</th><th>체류</th></tr>
<tr><td colspan="2">영주교포의 자녀</td><td>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td><td>2년</td><td>2년</td><td>2년</td><td>-</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 rowspan="4">외국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td></tr>
<tr><td rowspan="3">해외근무</td><td>공무원 자녀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 직원의 자녀</td><td>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자녀</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r>
<tr><td colspan="2">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td><td>정부의 초정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r>
<tr><td colspan="2">기타 재외국민</td><td>기타 적법한 사유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파견 교직원 등</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d>2년</td></tr>
<tr><td colspan="2">외국국적 취득자</td><td>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td><td>2년</td><td>2년</td><td>2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를 종합검토하여 해외거주기간 및 체류기간을 산정함.

▶ 전 교육과정이수자・북한이탈주민(정원 제한 없음)

지원 대상	지원자격									비고
	요건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3급 이상의 TOPIK 성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12년	12년	12년	-	-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2. 지원자격 인정기준

▶ 공통사항

□ 입학허용기간

- 고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2년 6개월 이내
  단,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함
-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없음

□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되며,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함.

□ 재학기간, 근무기간, 거주 및 체류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 재학기간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 고 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 고 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2년 이상 재학한 경우 재학기간 으로 인정함.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재학기간 중 재학 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학 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부모의 근무·거주·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부모 이혼 혹은 사망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의 자격요건을 심사함.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 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재학기간**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 고등학교 과정(2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불인정함.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 등의 조건**

-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자격이 부여됨.

Ⅳ. 제출서류

구분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 주민
입학원서(본교양식)	○	○	○	○	○	○	○
외국학교조사표	○	○	○	○	○	○	○
지원자격심사 신청서	○	○	○	○	○	○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	○	○	○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	○	○	○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영주교포 자녀외국인은 주민등록말소등본 제출	○	○	○	○	○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 부, 모)**	○	○	○	○	○	○	
영주권 사본**(학생, 부, 모)**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학생, 부, 모)**	○	○	○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	○			
외국국적 증명서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국내발급)					○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해당자 - 법인, 자영업자)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선교기관발급 관련 증빙서류				○ **선교활동**			
정부초청 및 추천에 관한 증빙 서류				○			
납세증명서(해당자 - 법인, 자영업자)				○			
유학비자사본 및 유학(연수)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 **유학연수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3급 이상)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학력증명서							○

▶ **유의사항**

- **외국 학교 및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소재국 영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입학지원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 **한국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Ⅴ. 전형방법

▶ **전형방법**

구분	법령구분	면접고사	서류심사
재외국민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100%	
전 교육과정이수자·북한이탈주민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100%

- 입학정원 2% 이내 모집인 경우 구술면접을 100% 반영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있을 경우 차점자순으로 선발합니다.
- 면접고사 응시순서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전형일정의 중복을 피하여 지원바랍니다.
- 면접고사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면접고사**

- 면접일자 : 2019. 10. 05(토)

구분	최저점	최고점
점수	900점	1000점

Ⅵ. 원서접수 및 전형료

▶ **원서접수기간** : 2019. 9. 6(금) ~ 9. 10(화) 09:00 ~ 18:00 동서대학교 방문 접수

▶ **전형료 :** 전형료 면제

▶ **유의사항**

-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내용수정,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접수취소가 불가합니다.
- 단, 천재지변, 질병, 기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접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Ⅶ.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 : 2019. 11. 08(금) [홈페이지 개별 조회]

▶ 등록금 납부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 2019. 12. 11(수) ~ 13(금)
- 잔여(최종)등록금 납부 : 2020. 2. 5(수) ~ 2. 7(금)
- 합격에 대한 최종 확인은 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험생이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합격자발표, 등록확인예치금, 잔여(최종)등록금 납부기간 등 모든 전형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모든 납부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Ⅷ. 수험생 유의사항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학생의 전형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전형이라 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를 취소합니다.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학생은 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단위에 지원할수 없습니다.

[이중등록 금지사항]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 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없이 무효로 합니다.
-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원서제출은 지원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기간 내에 접수해야 함(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원서의 제출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주소 불명 등으로 초래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입학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함.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전형기간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합격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처리함.
- 구비서류의 지연도착, 구비서류의 미비 또는 판독불가, 번역오류,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두절(연락처 오기재 등),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우리대학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대학교는 기독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매주 1회 학생채플을 실시함.
-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지원자 및 보호자의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형기간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입학처로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함.
- 접수된 원서 및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전형 및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한 후에 접수하여야 함. 입력상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입학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지원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교생활기록부자료, 환불계좌번호 등
  - 학교정보 : 최종학력, 출신학교명, 재학기간, 졸업(예정)년도, 외국 거주 및 체류기간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학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021학년도 지원자격 변경 사전 공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합니다.

구분	2020학년도 이전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기간	대학자율시행	고교 1년 포함 중・고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이상 - 보호자: 학생이수기간의 2/3이상

□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 확인 필수

- 이외의 재외국민전형 세부 선발 기준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한 후에 지원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확인한 후 입학처[051)320-21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수 외국인 입학문의는 국제교류센터[051)320-20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외 국 학 교 조 사 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	

구분	학교명 및 연락처		학사운용	
1	학교명		학제	( )학년부터 ( )학년까지 운영
	주소		학년기간	학년의 시작 - ( )월부터 학년의 끝 - ( )월까지
	전화번호		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 겨울방학기간 :
	팩스번호			
	E-mail		기타사항	
	홈페이지			
2	학교명		학제	( )학년부터 ( )학년까지 운영
	주소		학년기간	학년의 시작 - ( )월부터 학년의 끝 - ( )월까지
	전화번호		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 겨울방학기간 :
	팩스번호			
	E-mail		기타사항	
	홈페이지			
3	학교명		학제	( )학년부터 ( )학년까지 운영
	주소		학년기간	학년의 시작 - ( )월부터 학년의 끝 - ( )월까지
	전화번호		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 겨울방학기간 :
	팩스번호			
	E-mail		기타사항	
	홈페이지			
4	학교명		학제	( )학년부터 ( )학년까지 운영
	주소		학년기간	학년의 시작 - ( )월부터 학년의 끝 - ( )월까지
	전화번호		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 겨울방학기간 :
	팩스번호			
	E-mail		기타사항	
	홈페이지			

1. 재학했던 모든 외국소재 학교를 기재하며, 학교명은 해당학교의 공식명칭을 기입합니다.
2.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예시) 한국 +82-051-320-2115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자격심사 신청서

수 험 번 호	
모 집 단 위	
성 명	
지원 자격 구분	

1.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 (초등학교부터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학교소재지		수 학 기 간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 간	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수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2. 특이사항 **(휴반,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